

안무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

제정 : 2015 . 12 . 11.

변경 : 2016 . 02 . 12.

변경 : 2016 . 06 . 06.

(사)한국안무협회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(사)한국안무협회(이하 “본 협회” 라 한다)가 대리중개 계약을 통해 위탁받은 안무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의 분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권리자 : 한 저작물에 안무가를 말한다.(이들의 저작 재산권의 승계자와 양수자, 공동창작자를 포함한다)
2. 저작물자료 : 작품신고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작물의 권리자,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.
3. 국제표 : 외국 안무저작권단체와 관리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작성되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양식을 말한다.
4. 관리저작물 : 권리자가 본 협회에 신고하여 등록된 저작물을 말하며, 상호 관리 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포함한다.
5. 분배자료 :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안무보고서, 외국저작권관리 단체로부터 송부된 분배명세서, 그 밖의 저작물 사용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, 본 협회 가 사용료 분배를 위해 권리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와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.
6. 분배대상사용료 :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이 되는 사용료를 말한다.
7. 분배대상저작물 : 분배대상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되는 관리저작물을 말한다.
8. 큐시트(Cue-sheet) :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은 방송진행표로 저작물, 그 권리자 및 사용시간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분배대상자)

- ① 사용된 관리저작물의 권리자는 해당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된다.

제4조(분배대상 저작물)

분배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사용료의 징수기간에 사용된 저작물이나 징수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.

제5조(권리자의 확정방법 등)

권리자는 저작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확정한다.

제6조(분배대상 저작물 자료 확정)

- ①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 저작물 자료 확정은 분배기(2월,5월,8월,11월) 당월 15일까지 등록된 저작물 자료에 의거 확정하고 분배한다.
- ② 분배기 당월 15일이 지나 저작물 자료를 등록할 시 다음 분배 기부터 등급별 분배율 표를 적용하여 분배한다.

제7조(분배자료)

- ① 사용료의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.
- ② 분배자료에 관리저작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본 협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분배대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분배대상 저작물에서 제외한다.

제8조(분배계산방법)

- ① 포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,
협회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후 등급별 분배율 표를 적용하여 분배한다.

등급별 분배율표

A등급	35%
B등급	30%
C등급	20%
D등급	10%
E등급	5%

$$\text{분배액} = \text{총 징수금액} \times \text{협회수수료율} \times \text{등급별 분배율} \div \text{등급별 인원수}$$

- ② 안무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.
$$\text{저작물에 대한 분배액} = \text{분배대상사용료} \times \text{협회수수료율}$$

제9조(분배기)

- ① 분배 시기는 아래와 같다.

징수기	분배기	징수기	분배기
1월, 2월, 3월	5월	4월, 5월, 6월	8월
7월, 8월, 9월	11월	10월, 11월, 12월	2월

- ② 분배일은 분배 당월 마지막일로 하며, 마지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 평일에 지급한다.

제10조(분배의 조정)

- ① 사용료가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권리자에게 통보하고, 다음분기 사용료 분배 시 그 차액을 분배받을 사용료로부터 환수 또는 추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.
- ② 분배받는 금액이 10,000원 이하일 경우 권리자는 다음 분배기로 이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③ 분배대상 저작물의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에 관련된 사용료의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회에서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 자료를 첨부해서 분배를 청구 할 수 있다.

제11조(분배 보상 청구 및 지급)

- ① 협회는 저작권 대리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권리자와 매 분배기에 권리자이나 협회에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사용료 분배를 받지 못하는 권리자를 위해 일정의 보상금을 산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보상금 산출은 총 징수 금액 중 협회에서 정해 제외한 수수료 중 10%로 한다.
- ③ 보상금은 3개월 동안 보관하며 보관기간동안 보상금 수령자가 없을시 보상금은 협회로 귀속되며 그 다음 일부터 새로이 산출하여 3개월간 보관한다.
- ④ 대리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여 회원등급이 정해질시 보상금 분배기에 자신의 등급별로 보상금을 분배 받을 수 있다.
- ⑤ 보상금은 분기마다 분배하며 분배방식은 3개월 동안 산출된 보상금 중에서 회원 등급별 분배율을 적용하여 분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5. 12. 11.)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6. 02. 15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6. 06. 06.)